

**'23.7.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
산재보험제도 안내**

'23. 6. 30.



**근로복지공단
고용·산재보험안전망강화TF**

차례

1 제도개선 추진 배경 및 경과

2 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

3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

1. 제도개선 추진 배경 및 경과

◆ **(추진 배경)** 현행 특고 전속성* 요건에 따라 특고·플랫폼 종사자 보호 한계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, 보상제도 개선 필요성 증대

*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(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1호)

◆ **(추진 경과)**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적용 및 보상제도 개선 관련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('22.6.10.) → '23.7.1. 시행

-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('23.6.27.)
-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예정 ('23.6.30.)

2. 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

산재보험 적용 대상

◆ 적용대상자(노무제공자)

- 現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,
“특고”와 “플랫폼 종사자”를 → “노무제공자”의 범주로 재정의
※ (플랫폼 종사자)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-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①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②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,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,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

2. 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

산재보험 적용 대상

◆ 산재보험 적용대상 대어 제품 방문점검원 (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1호)

(정의)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어 제품 방문점검원

→ 현행과 동일

◆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(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)

- 적용대상은 동일하나, 직종 정의만 변경

(정의)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·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→ 고용보험과 직종 정의를 통일

※ 고용보험과 달리 연령(65세 이상자), 소득(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자), 외국인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.

2. 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

노무제공자 정보 관리

◆ 입·이직 신고 제도 및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

- 사업주의 보험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입·이직 신고 제도 폐지
 - 월 보수액 신고(후술)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정보를 관리
- 부상·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

※ 건설·벌목업 외의 사업(부과고지 사업)에 노무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,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('23.12.31.까지에 한함)에 한하여 입·이직 신고 및 휴업신고

2. 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

산재보험료 산정 및 월 보수액

◆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

- ‘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’에 ‘보험료율’을 곱하여 매월 산정

$$\text{산재보험료} = \text{개인별 월 보수액} \times \text{산재보험료율}$$

※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한선·하한선 없음

◆ 월 보수액의 산정 및 신고 ※ 보험료 징수체계를 ‘기준보수 → 실보수’로 전환

- (산정)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**사업소득*(A)**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(B)과 **경비(C)**를 제외한 금액

$$\text{월 보수액} = (\text{사업소득 A} - \text{비과세소득 B}) - \text{경비 C}$$

*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(국세청 매월 신고) 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 가능

- (신고)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, 직종, 월 보수액 등을 노무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

-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신고 가능(소득 증명 서류 첨부)

2. 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

경비 및 요율

◆ 경비

- ‘사업소득-비과세소득’의 일정 비율(경비공제율)을 경비로 인정
(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) ※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님

$$\text{경비} = (\text{사업소득 A} - \text{비과세소득 B}) \times \text{경비공제율}$$

- 경비공제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고시하며, 고용보험과 동일
※ (경비공제율)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2%,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24.2%

◆ 산재보험요율(직종별 요율) ※ 사업장(업종별)의 요율 → 직종별 요율로 전환

- 노무제공자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
※ '23년 직종별 요율 0.7% + 출퇴근재해 요율 0.1% 추가 = **총 0.8%**
- 노무제공자의 모든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
요율(개별실적요율) 산정에 미반영

2. 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

산재보험료 부담 및 납부

◆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, 납부

-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½씩 부담
- 사업주는 종사자 부담분을 원천공제 및 사업주 본인 부담분을 합산하여 매월 납부

◆ 산재보험료 산정 예시

-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의 7월 총 사업소득이 2,000,000원 경우(비과세소득 0원 가정)
 - 경비: $2,000,000 \times 22\% = 440,000$ 원
 - 월 보수액: $2,000,000\text{원} - 440,000\text{원} = 1,560,000$ 원
 - 산재보험료: $1,560,000\text{원} \times 0.8\% = 12,480$ 원
 - 사업주 및 종사자 각각의 보험료 부담분: $12,480\text{원} \div 2 = 6,240$ 원

2. 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

산재보험료 부담

◆ 사업주·종사자 분담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(24. 1월 귀속분 보험료부터 적용)

-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**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1/2를 곱한 금액** ※ '23년도 귀속의 산재보험료는 현행 방식대로 부과

예)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2,289,250원이고 직종별 요율(출퇴근재해요율 포함) 0.8%

| 구분 | 월 보수액 × 요율 | 산재보험료 (원단위 절사) | 사업주·종사자 보험료 부담액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현행 | 2,289,250원 × 0.8% = 18,314원 | 18,310원 | 18,310 ÷ 2 = 9,155원 |
| 개정안 | 사업주 | 2,289,250원 × 0.4% = 9,157원 | 9,150원 |
| | 종사자 | 2,289,250원 × 0.4% = 9,157원 | 9,150원 |
| | 합계 | | 18,300원 |
| 차액 | | 10원 | |

3.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

업무상 재해 인정 및 신청

◆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및 인정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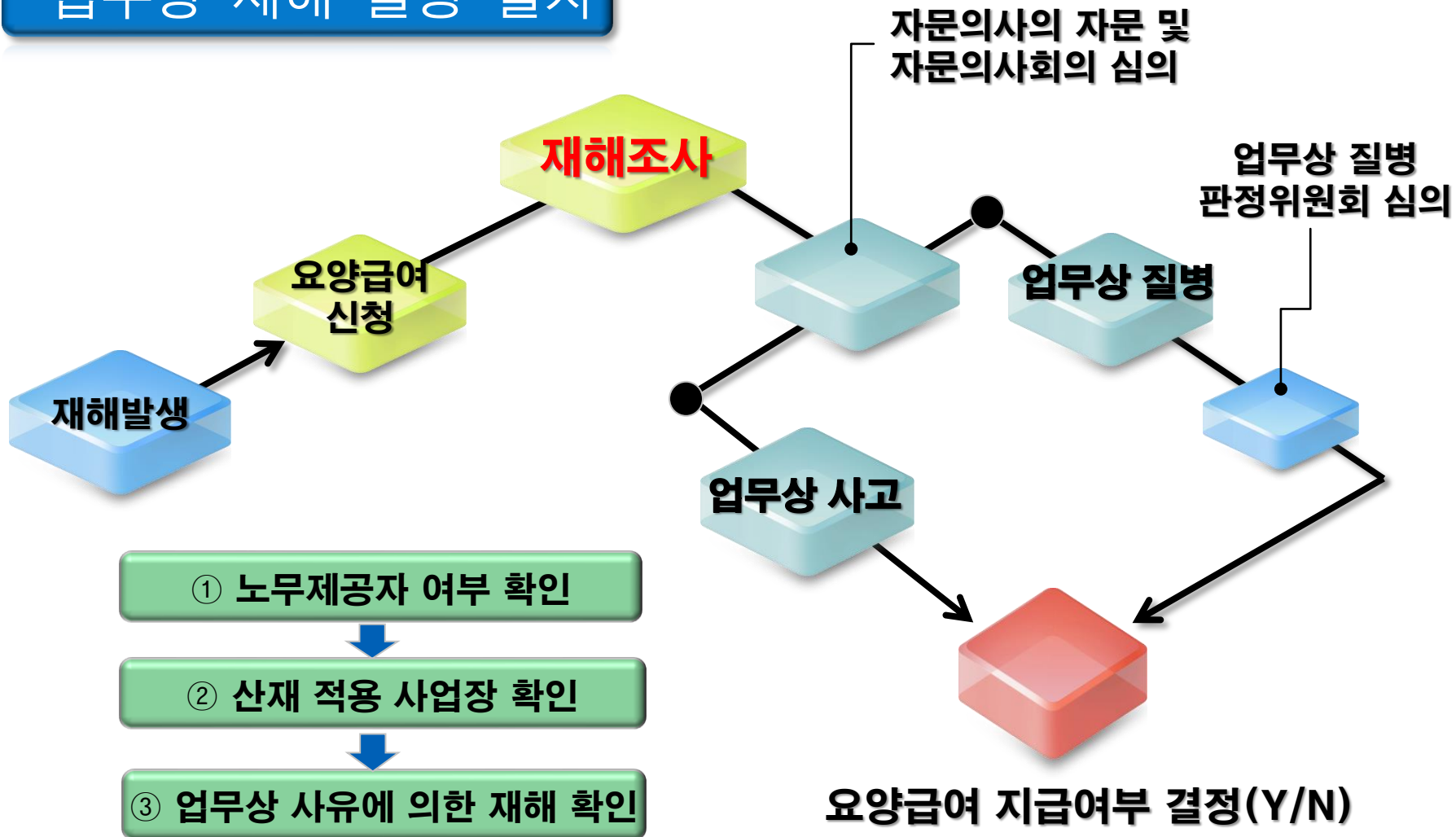
- 근로자와 동일하게 **업무상 사고, 질병 및 출·퇴근재해**를 보호
-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

◆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(요양급여 신청서 제출)

- (공단 관할 소속기관) '23.7.부터 기존 “사업장 소재지 관할 →
요양급여신청소건서 발급 **의료기관 관할**” 소속기관으로 변경
- (신청) **사업주 날인('18.1. 폐지) 없이** 노무제공자 본인 서명만으로 신청
 - **산재보험 의료기관**은 재해자를 위해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대행

3.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

업무상 재해 결정 절차



3.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

◆ 산재보험급여

| 구분 | 급여의 종류 | 급여 내용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
| 요양 중 | 요양급여 | ○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단 이 의료기관에 치료비 직접 지급 - 간병료, 이송료(통원 교통비) 등은 재해자에게 지급 |
| | 휴업급여 | ○ 4일 이상의 요양(입·통원)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보수의 70% 를 지급 |
| | 상병보상연금 | ○ 요양기간이 2년 경과 시 폐질등급 1~3급 재해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|
| 요양 종료 이후 | 장해급여 | ○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별(1~14급) 해당하는 장애급여 [연금(1~7급) 또는 일시금] 지급 ⇒ 평균보수 × 장애연금(일시금) 일수 ※ 장애연금 일수 138일(7급)~329일(1급), 장애일시금 일수 55일(14급)~1,474일(1급) |
| | 간병급여 | ○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재해자에게 지급 |
| | 직업재활급여 | ○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위하여 직업훈련비용 등 지급 |
| 사망 시 | 유족급여 | ○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(배우자, 자녀, 부모 등)에게 연금(평균보수의 52%~67%) 또는 일시금(평균보수의 1300일분) 지급 |
| | 장례비 | ○ 평균보수의 120일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|

3.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

평균보수의 산정

◆ **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보수** ※ **평균임금(고용노동부 고시) → 평균보수 개편**

● 휴업급여, 장애급여 등 현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평균보수를 산정

- **(평균보수 정의)** 재해발생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
- **(보수와 임금의 합산)**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(일용근로자는 제외)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**보수와 임금을 합산**
- **(평균보수의 산정)**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

3.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

보험급여의 지급

- ◆ **(최저 휴업급여 보장액)** 공단에 신고된 전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
→ '23.7 ~ '24.12. **1일당 41,150원 (30일 환산 시 1,234,500원)**



감사합니다